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4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20499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국수출입은행
피 고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7. 4. 14. 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613,670,600원의,

나.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2017. 4. 11. 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414,086,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선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위 등

1) 원고는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금융기관이다. 원고는 대선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선조선'이라 한다)에 대출을 실시하였으나, 대선조선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와 대선조선의 채권자들인 금융기관들은 2010년경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결성하여 대선조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대선조선에 대한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2014. 4. 11. 대선조선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 52억 원 상당을 출자전환하여 대선조선의 발행주식 중 1,040,000주(67.27%)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대선조선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3) 원고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2017. 4. 11.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간주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신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4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414,086,5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2017. 4.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613,670,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피고들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불복

원고는 2017. 7.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간주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만일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될 금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간주취득세는 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무신고가산세 역시 존재할 수 없다.

3) 이 사건과 같이 납부하여야 할 간주취득세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4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20조의 법문에 의하면, 취득세의 부과대상으로서 그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이고, 위 과세물건에 법인의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그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또한 법인과 주주는 법인격이 준별되므로,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주주가 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

다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를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점주주에게 법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3)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는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위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조항의 법문에 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4

120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여지는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법인인 대선조선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대선조선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원고는 대선조선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물론이고 이를 전제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원고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4

판사 이환기

판사 우경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4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⑥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제3항 본문, 제5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1항, 제89조제3항 본문 및 제92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4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끝.